## 공화국 행정법률제도의 본질과 내용

김 경 현

선군시대는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인 사회주의법률제도 특히 행정법률제도에 대한 리해를 바로 가지고 그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하에서 국가정치생활, 경제생활을 비롯한 모든 사회생활은 법에 의하여 규제되는것만큼 사회주의법의 규제적, 통제적역할을 높이고 법질서를 철저히 세우는 것은 국가사회제도를 공고히 하고 그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으로 됩니다.》(《김정일선집》제10권 중보판 134페지)

우리 공화국 행정법률제도는 본질에 있어서 공화국 행정법규범과 규정, 세칙들에 기초한 국가행정기관들의 행정활동질서의 공고한 체계이다.

우리 공화국 행정법률제도는 우선 국가의 행정법규범과 규정, 세칙들에 기초한 질 서의 공고한 체계이다.

법률제도는 일정한 법규범에 기초하여 확립되는것만큼 그것이 기초하는 법규범 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여러가지로 구분 된다. 형법, 형사소송법 등 형사법규범에 기 초하여 확립된 법률제도는 형사법률제도 이고 민법, 민사소송법을 비롯한 민사법규 범에 기초하여 확립된 법률제도는 민사법규 범에 기초하여 확립된 법률제도는 면사법 률제도이다. 공화국 행정법률제도는 형사 법규범이나 민사법규범이 아니라 다름아 닌 국가의 행정법규범과 규정, 세칙들에 기 초한 질서의 공고한 체계이다.

사회생활이 국가에 의하여 조직, 관리, 보 장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정치 와 군사, 경제와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부문은 국가의 행정법규범과 규정, 세칙들 에 의하여 규제된다. 이로부터 사회생활의 모든 부문, 모든 지역, 모든 단위들에는 행정적조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수많은 행정법규범과 부문규정, 시행세칙들이 구체적으로 제정되여있고 그에 기초한 여러가지 다양한 관리운영질서가 확립되여있다.

우리 공화국 행정법률제도는 다음으로 국가기관들의 행정직권행사질서의 공고한 체계이다.

일반적으로 법률제도는 법규범에 기초 하여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 법률관 계당사자들의 활동에 의하여 확립되며 이 로부터 법률제도의 성격과 내용은 중요하 게 해당 법률관계당사자들이 지니는 권리 의무의 내용에 의하여 규정된다.

민사법률제도는 민사법률관계당사자로서의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이 지니는 민사상권리의 행사와 의무리행질서의 공고한 체계이며 형사법률제도는 형사법률관계당사자로서의 검찰재판기관들이 지니는 사법검찰권행사질서의 공고한 체계이다

행정법률관계는 행정법률관계의 쌍방당 사자가운데서 주도적지위를 차지하는 행 정담당자로서의 국가기관의 주동적이며 일 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발생하며 그 의 사표시는 다름아닌 그의 직권행사이다.

국가는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과 여러가지 형식의 법문건에 들어있는 행정법규범 들을 통하여 국가기관들에 행정법규범제 정권, 행정명령지시권, 행정결정권, 행정검열감독권, 행정치벌권, 행정강제집행권 등일정한 행정직권을 부여하며 그의 행사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규제한다. 실례로 법제정법에는 행정법규범제정권의 부여와 그행사절차와 방법이 규제되여있고 행정검열법에는 국가검열기관에 대한 행정검열권권의 부여와 행정검열의 관할, 행정검열권

의 행사절차와 방법 등이 규제되여있다. 바로 행정법규범과 규정, 세칙들에 기초한 공화국 국가기관들의 행정직권행사질서의 체계가 공화국 행정법률제도이다.

우리 공화국 행정법률제도는 또한 행정 법률관계당사자들사이의 행정적명령지시, 복종집행질서의 공고한 체계이다.

다른 법률관계와 구별되는 행정법률관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당사자들사이의 명령지시, 복종집행관계라는데있다. 행정은 말그대로 다스린다는 뜻으로서 국가의 권력적활동을 의미하며 국가권력에 기초한 사회생활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장악과 조직, 관리, 집행활동이 바로 행정인것이다. 행정은 그자체의 본질적특성으로 하여 국가기관을 일방으로하고 사회의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을 타방으로 하는 명령지시, 복종집행관계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이것은 사회주의국가의 사회생활전반에 대한 통일적기도기능실현의 위력한 수단으로 되고있다.

사회생활전반이 국가에 의하여 지도관 리되는 사회주의제도에서 사회생활의 모 든 부문, 모든 단위에는 국가에 의한 정연 한 지도관리체계가 수립되게 되며 이것은 행정법규범에 기초한 국가기관의 명령지 시에 대한 복종집행질서에 의하여 담보되 게 된다. 사회주의헌법 제5조에 규제되여 있는 국가기관조직운영원칙으로서의 민주 주의중앙집권제와 제6장 국가기구 그리고 기구법, 행정검열법, 인민경제계획법, 통계 법, 품질감독법, 출판법 등 행정법부문의 수 많은 단행법들에는 상급국가기관과 하급 국가기관사이, 중앙국가기관과 지방국가기 관사이, 국가기관과 사회의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사이의 명령지시, 복종집행 관계와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에 대 한 국가기관의 지도감독통제관계가 명백 히 규제되여있다. 행정법규범에 기초한 국 가기관의 명령지시에 대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의 복종집행질서의 공고한 체계가 공화국 행정법률제도이다.

국가의 행정법규범과 규정, 세칙들에 기초하여 확립된 공화국 행정법률제도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기초하고있는 법규범과 규정, 세칙들의 성격과 내용, 기능과 역할에따라 행정행위제도, 행정확인제도, 행정허가제도, 행정강제제도, 행정검열감독제도, 행정처벌제도, 행정신소청원제도, 행정보상제도, 행정기구제도, 행정법규제정제도등으로 구분된다.

공화국 행정법률제도를 구성하는 중요 부문별행정법률제도들은 그 구체적인 기 능과 역할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다같이 사 회주의국가의 사회생활전반에 대한 통일 적지도기능실현의 위력한 수단으로서 전 체 주민과 국토, 국가사회재산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사회생활을 조직, 관리, 보장 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 국가의 법을 철저 히 집행하기 위한 법적통제를 강화하는데 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선 전체 주민과 국토, 국가사회재산을 통일적으로 장악하는것은 공화국 행정법 률제도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주민과 국토, 국가사회재산을 통일적으로 장악하는것은 사회주의국가의 사회생활전반에 대한 통일적지도기능실현에서 나서는 기초적이며 선차적인 문제이다. 그것은 대상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이 없이 해당 대상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관리를 실현할수 없기때문이다.

사회주의제도에서 주민과 국토, 국가사회재산에 대한 통일적장악은 중요하게 그와 관련한 국가의 행정법규범과 규정, 세칙들과 그에 기초한 여러 부문별행정법률제도들에 의하여 실현된다. 주민과 국토, 국가사회재산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국가의 기능실현에 복무하는 행정법부문의 단행법들로서는 공증법, 인민경제계획법, 통

계법, 공민등록법, 지하자원법, 품질인증법, 배등록법, 외국투자기업등록법, 수출입상 품검사법 등을 들수 있으며 내각규정들로 서는 《평양시민증에 관한 규정》, 《과학 기술성과의 심의, 등록 및 도입에 관한 규 정》,《공인법시행규정》,《다른 나라 배 의 등록규정》、《품질인증사업규정》、《기 관,기업소등록규정》,《부동산규정》,《외 국인투자기업등록규정》,《배등록법시행 규정》 등을 들수 있다. 국가는 행정확인 제도와 행정허가제도를 비롯한 해당 부문 별행정법률제도의 중요내용을 이루는 각 종 등록, 비준, 승인, 허가, 증명 등의 행 정활동을 통하여 관할지역내의 주민과 국 토, 자연부원과 국가사회재산을 통일적으 로 장악함으로써 모든 인적 및 물적자원 들이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그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동원리용될수 있 게 하다.

또한 사회생활을 조직하고 관리하며 보 장하는것은 우리 공화국 행정법률제도의 중 요한 내용을 이룬다.

사회생활을 조직하고 관리하며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국가의 사회생활전반에 대한 통일적지도기능실현에서 나서는 기본문제이다. 그것은 사회생활전반에 대한 통일적지도기능이 본질에 있어서 사회주의국가가 사회생활을 직접 조직하고 관리하며 보장하는 활동이기때문이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사회와 달리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과 활동을 전사회적범위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정연한 제도와 질서에 따라 움직이며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물질문화생활에 대한 보장 등 사회생활에 대한 조직, 관리, 보장사업이 국가에 의하여진행된다. 사회주의헌법 제6장 국가기구에들어있는 국가기관들의 법적지위, 임무와권한, 활동형식을 규제한 규범들과 법제정

법, 기구법, 지방주권기관법, 행정구역법, 공무원자격판정법, 신소청원법, 손해보상 법 등 여러 부문법, 단행법들, 경제, 문화, 인민생활보장관계법들을 비롯하여 사회생 활을 조직하고 관리하며 보장하기 위한 국 가의 기능실현에 복무하는 행정법부문의 단 행법들과 내각규정들은 수없이 많다. 국가 는 행정법규제정제도, 행정기구제도, 행정 행위제도, 행정신소청원제도, 행정보상제 도를 비롯한 해당 부문별행정법률제도의 중 요내용을 이루는 명령, 결정, 지시의 채택 과 하달, 그 집행정형에 대한 료해장악과 지 도통제, 총화와 재포치, 신소청원료해처리 와 행정보상 등의 행정활동을 통하여 모 든 사회생활이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 구, 의사와 리익에 맞게 조직, 관리, 보장 되도록 한다.

또한 당의 로선과 정책, 국가의 법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법적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공화국 행정법률제도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은 권력으로 사회를 다스리는 기관으로 되여있으며 행정법률제도 역시 국가권력에 기초한다.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을 사 명으로 하는 사회주의국가의 행정기관이 국 가관리에서 권력을 만능으로 삼을수는 없 지만 그렇다고 하여 권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행정이 말그대로 국가의 권 력적활동이며 국가의 행정법규범과 규정, 세칙들이 다른 법규범들과 마찬가지로 국 가권력에 의하여 그 준수집행이 담보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사회의 과도 적특성으로 하여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아 직 낡은 사상잔재가 적지 않게 남아있고 특 히 미일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들의 반 사회주의, 반공화국모략책동이 끊임없이 계 속되고있는 조건에서 권력적, 법적통제를 결합하지 않고 사상교양 하나만으로는 국 가관리를 원만히 해나갈수 없기때문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국가의 권 력적기능은 중요하게 법적통제기능으로 표 현되며 여기에서 행정법적통제는 중요한 자 리를 차지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 국가의 법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법적통제를 강 화하기 위한 국가의 기능실현에 복무하는 행정법부문의 단행법들로서는 인민보안단 속법, 국경위생검역법, 전염병예방법, 수의 방역법, 국토환경보호단속법, 세관법, 행정 검열법, 행정처벌법 등을 들수 있으며 내 각규정들로서는 《폭발성가스취급에 관한 규정》, 《빈차감독 및 운영규정》, 《교 통안전규정》、《국경통행검사규정》、《행 정검열법시행규정》,《도인민위원회검열, 통제사업규정》, 《재정검열규정》, 《량 곡검열규정》、《위생검열규정》、《벌금 규정》,《자동차, 뜨락또르감독규정》,《교 통안전규정》,《철도법위반행위에 대한 제 재규정》 등을 들수 있다. 국가는 행정강 제제도, 행정검열감독제도, 행정처벌제도 를 비롯한 해당 부문별행정법률제도의 중 요내용을 이루는 료해장악, 강제집행, 행 정처벌적용 등의 행정활동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의 당의 로선과 정 책, 국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그의 철저한 집행대책을 세 우며 나타난 위법행위에 대해 엄격한 행 정법적제재를 실시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 국가의 법준수집행정 형에 대한 료해장악과 나타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법적제재로 이루어지는 행정법 적통제는 공화국 행정법률제도를 철저히 옹 호고수하고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 민들이 강성국가건설의 담당자로서의 책 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서 커다란 의 의를 가진다.

우리 당정책과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을 반영하고있는 국가의 행정법규범 과 규정, 세칙들과 그에 기초하여 확립된 공화국 행정법률제도는 그자체의 혁명적 이며 인민적인 성격과 국가관리와 사회 생활전반에 대한 사회주의국가의 중앙집 권적이며 통일적인 조직, 관리, 집행활동 의 가장 기본적인 법적무기로서의 그자 체의 본질적특성으로 하여 우리 당의 새 로운 전략적로선과 국방공업을 우선적으 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 에 발전시킬데 대한 선군시대 경제건설 로선을 비롯한 당의 로선과 정책집행을 직 접 조직하고 인민들의 행복한 물질문화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실질적으로 보 장하며 선군시대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시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무기로서의 행정법과 행정법률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나감으로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반드시 앞당겨 실현하고야 말것이다.